

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5~73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	2005. 11.
제 출 자	거 창 군 수

■ 개정이유

-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선진형 재정제도 도입으로 성과관리를 고려한 사업별 예산제도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수행과,
-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정원 범위내에서 공무원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■ 주요골자

가. 정원의 조정

- 공무원정원 : 673명 → 677명
(복식부기 업무도입 : 2명, 사업별예산제도 운영 : 2명)
- 집행기관의 정원 : 659명 → 663명(증 4명)
-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14명(현행과 같음)

나. [별표]의 정원관리기관별 두는 직급별 정원 조정

다. 부칙에 한시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 규정을 둠. (10. 20개정)

■ 개정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03조(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)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-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관련 한시정원 승인:경남도 행정과-10570('05.9.30)
- 복식부기제도 운영에 따른 한시정원 승인:경남도 행정과-11215('05.10.17)

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“673명”을 “677명”으로, 동조제1호중 “659명”을 “663명”으로 한다.

“별표”를 “별지”와 같이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시정원) 집행기관의 한시정원 8명(6급3명, 7급3명, 8급2명)중 3명(6급1명, 7급1명, 8급1명)은 2006년 12월 31일, 3명(6급1명, 7급1명, 8급1명)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, 2명(6급1명, 7급1명)은 2007년 12월 31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<u>673명</u>으로 하되,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659명</u></p> <p>2. (생략)</p>	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<u>677명</u>----- -----</p> <p>1. ----- : <u>663명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		

[별표]

거창군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(제3조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의회	직속기관			사업소	읍	면	
				소계	기술센터	보건소				
총 계	677 (673)	262 (258)	14	134	61	73	64	45	158	
정 무 직	1	1								
일반직	소계	531 (527)	216 (212)	8	78	23	55	42	40	147
	4급	2	1	0	1	1	0	0	0	0
	4~5급	2	1	0	1	0	1	0	0	0
	5급	31	11	3	2	1	1	3	1	11
	6급	143 (142)	63 (62)	3	10	5	5	11	12	44
	7급	164 (163)	77 (78)	2	25	10	15	13	12	33
	8급	127 (126)	49 (48)	0	35	5	30	9	10	24
	9급	62 (61)	12 (11)	0	4	1	3	6	5	35
별정직	소계	17	1	0	16	0	16	0	0	0
	6급	1	1	0	0		0			
	6~7급	16	0	0	16		16	0		
연구사	4	1	0	2	2		1			
지도직	소계	32	0	0	32	32	0	0	0	0
	지도관	2	0	0	2	2				
	지도사	30	0	0	30	30				
기능직	소계	92	43	6	6	4	2	21	5	11
	6급	3	1	0	1	0	1	1	0	0
	7급	9	3	1	2	1	1	3	0	0
	8급	14	2	2	0	0	0	3	1	6
	9급	28	18	1	1	1	0	6	1	1
	10급	38	19	2	2	2	0	8	3	4